



사단법인 설립허가증

1. 법인명칭 : 사단법인 웃음플러스
2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4 브라운스톤서초 B119호
3. 대표자 : 신 창 성(1967.1.13.)
4. 사업내용
 -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
 - 무의탁 독거어르신 지원
 -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5.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
 - 뒷면 기재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.

2017년 4월 12일

서울특별시장



〈허가조건〉

1. 법인은 「민법」,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.
3.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출연재산 소유권이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본 허가를 취소한다.
4.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38조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가.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.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다.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.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 마.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
 바.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
5.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

- 가.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
 나.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

6.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- 가. 등기를 해태한 때 나.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
 다.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, 감독을 방해한 때
 라.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
 마. 총회의 의사록 작성·기명날인·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
 바.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
 사.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

〈준수사항〉

1.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가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
 나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
 다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 라. 사단법인의 경우 현재 회원 현황 1부

2. 법인이 해산(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)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3.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〈변경사항〉

년 월 일	내 용	기재자 성명(인)